

7. 建設工事 不實防止對策(案)

資料提供：建設部

건설부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'92. 8. 21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시안에 대해 8. 26 및 9. 2 정책토론회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1차적 협의를 거쳐 다음 대책(안)을 마련하였음

對策(案)의 基本方向

- 부실시공을 행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
- 입찰·계약제도를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 위주로 전환
- 원·하도급자간의 상호 협력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건설업거래질서의 건전화 도모
- 업체의 건설시공을 검사하는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
- 특히 건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종 제도운용의 내실화

對策(案) 細部內容

1. 건설업체의 체질개선

1-1. 도급한도액 책정제도 개선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건설공사의 입찰시 도급한도액이 토목·건축 등 공종에 구분없이 모든 공사실적을 기준으

로 산정되어 업체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음

- 주택전문 건설업체도 실적만 많으면 대규모 댐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순 초래
-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도급한도액 산정시 불이익제도가 없음

나. 개선방안

- 도급한도액을 토목·건축으로 구분하여 업체의 전문성 제고(건설업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)
-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도급한도액에서 일정율을 감액하고 우수시공업체는 일정율을 가산하는 상벌평가액 규정을 신설하여 전실시공 유도(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)

1-2. 부실시공업체 제재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시공중 부실공사 발생시 6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
- 완공후 3~5년 이내에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하자 발생시 면허취소와 동시에 행위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

나. 개선방안

- 시공중 발생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벌칙규정 추가(건설업법 개정)

1-3. 건설업체의 위법행위 제재의 내실있는 운영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위법의 정도에 따라 최고 8월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6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관행상 과징금만 부과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미약

나. 개선방안

- 위법행위의 동기·회수 등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(제재처분기준 제정)

1-4. 건설업 신규참여 확대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면허취득기회 제약(3년마다 1회 실시)으로 면허가 이권화되어 있어 각종 부조리가 발생

하고,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품질 및 서비스경쟁 저해

나. 개선방안

- 면허조기 단축 검토

2. 입찰·계약제도 개선

2-1. 입찰자격 사전심사제(PQ)도입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도급한도액이 입찰 참가자격 기준으로 활용되어 공사의 종류별 특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의 선정이 어려움

나. 개선방안

- 입찰자격 사전심사제(PQ)를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공사중 교량, 터널, 댐, 지하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부터 우선 도입, 점진적 확대<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>

2-2. 정부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전환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기존 저가심의제는 도입취지와 달리 담당자의 전문지식결여, 절차상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운용되지 않고, 현실적으로는 직접공사비에 근접한 입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업체간 담합등 입찰부조리 성행

나. 개선방안

-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
 - 덤핑입찰에 의한 공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차액보증금제도 강화, 선금금 지급배제, 하자보수 보증강화 등 보완대책 강구(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)

2-3. 내역입찰제 적용대상 공사 확대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1억원미만 토목공사 및 30억원미만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을 먼저 결정한 후 이에 맞추어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어 적정공사비의 산출곤란 등 공사부실요인 내재

나. 개선방안

- 30억원미만 건축공사와 전기·전기통신·조경공사 등에 내역입찰제 확대(예산회계법시행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개정)

2-4. 적정공사비 확보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예정가격 결정시 재무관이 설계가격의 5~10%를 삭감하는 관행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저해
- 정부노임단가(매년초 결정 고시)가 시중노임단가의 64.5%수준('92상반기)으로 공사 부실 요인
- 신공법 등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이 설계에 반영을 기피하는 등 신공법의 보급·확산에 제약

나. 개선방안

- 부당한 삭감조정 금지(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)
- 정부노임단가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
 - 제1안: '93정부노임단가 결정시 시중노임의 80%까지 반영
 - 제2안: 년2회 고시
- 품셈현실화, 신기술·공법개발에 따른 품을 매년 확대제정 또는 개정
 -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공사원가 산정방법 마련(현재 용역작업중)
- 신기술 개발로 인한 공사비 절감액 전액을 기술개발업체에 지급하는 기술개발보상제도 활성화
- 계속비 제도의 활성화 방안 검토

3. 건전한 원·하도급 관계의 현성

3-1.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시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 50%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력이 약하여 불법하도급 근절이 어려움

나. 개선방안

- 무면허자에게 하도급시 면허 취소(건설업법 개정)
- 주택건설업체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시 등록 취소(주택건설촉진법 개정)

3-2. 건설하도급 계열화 추진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원·하도급자간의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하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업체들이 하도급 계열화 기피

나. 개선방안

- 업체 실태조사시 하도급 계열화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대상업체로 우선 지정하는 등 운영 강화
- 100억이상 공공공사부터 부대입찰제 의무화(건설업법 개정)
- 부대입찰제 및 하도급계열화 실시 우수업체에 대해 PQ심사기준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우대

4. 책임감리·감독체계의 정착

4-1. 민간책임 감리체제로 전환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의 시공감리제는 감독과 감리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

나. 개선방안

- 시공감리를 폐지하고 전면 책임감리제도로 일원화
 -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대안입찰공사,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실시(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)
- 부분책임감리제도 도입
 - 100억원이상 공사중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신공법적용 공종(건설기술관리법

시행령 개정)

-100억원 미만이라도 교량·터널등 주요구조물 또는 신공법적용 공종(건설기술관리법
시행령 개정)

• 신공법 적용공사에 대한 감리는

-공동감리단 구성 또는 대학·연구기관등 전문가에 자문의뢰

-필요시 외국용역업자를 감리자로 선정(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)

4-2. 감리 전문회사의 육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• '92. 9현재 감리전문회사 144개 등록(토목 57, 건축 87)

나. 개선방안

• 시공감리 폐지에 따라 기존 감리회사를 책임감리회사로 전환

-기술인력, 자본금, 실적 등에 따라 등급화하고 감리수행공사규모를 차등화(건설기술관
리법시행령 개정)

• 감리협회 설립

-감리전문회사의 자율성 제고

-감리협회에 공제조합기능 부여로 부실시공시 변상기능 수행(건설기술관리법 개정)

4-3.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• 감리자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어 건설업체 통제 곤란

• 부실감리 발생시 감리자의 손실변상 책임 미흡

나. 개선방안

• 감리자에게 공사중지, 재시공명령권등 실질적 권한 부여(건설기술관리법 개정)

• 감리자의 업무수행을 공무원 행위로 의제하여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을 강화(건설기술관
리법 개정)

• 부실감리로 재산상 피해발생시 감리 전문회사에게 변상책임부과, 감리협회의 변상책임보
증제도 신설(건설기술관리법 개정)

4-4. 감리대가의 현실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업무범위 등이 다른 건축사법 등 타법의 대가기준 채용으로 적정대가 지불 곤란

나. 개선방안

-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체계에 맞는 대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 (건설기술관리법 개정)

4-5. 민간감리 전문회사 기술인력의 신축적 활용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감리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현장 상주감리만을 인정하고 있고 경직적 기술자격제도로 인해 능력이 있더라도, 자격증 없는 기술인력이 감리에서 제외

나. 개선방안

- 유사자격증 기술자 및 경력기술자의 책임감리자 인정(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)

4-6. 감리제도 운용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감리착수가 공사착수보다 늦어 감리자의 설계도 검토기간 부족
- 매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, 장기공사의 경우 감리책임 불명확 우려

나. 개선방안

- 공사착공 시점과 감리착수시점을 일치시키고 장기 계속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감리계약 체결

5. 설계심의 내실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'87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(중앙·지방·특별)를 신설, 운영해오고 있으나, 설계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기간이 짧고(3~4일) 심의건수가 많아 심도있는 심의가 곤

란

나. 개선방안

- 설계심의 대상공사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심의건수를 축소하고, 사전검토기간을 6~8일로 확대하며, 대형·특수구조물 및 신공법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강화(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)
- 설계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

6. 건설기술 연구기능 보강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건설산업은 GDP의 20%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건설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~60%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음.
- 제조업의 기술개발은 제조업체가 이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지만 건설업체의 경우 공공성 때문에 직접이익의 향유가 곤란하며 건설업체 스스로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.

나. 개선방안

- 국가가 핵심건설기술을 개발하여 민간건설업체에 보급 확대
-필요한 예산·인력은 기능보강에 따라 확보

關係法令 整備 推進日程

〈법률개정〉

가. 금년 정기국회 상정

- 주택건설촉진법
-주택건설업체의 무면허업자에 대한 도급행위 처벌
* '92. 9. 18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통과

- 건설기술관리법
 - 민간책임감리체제로 전환
 - 감리전문회사 육성
 -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
 - 감리대가 현실화
- * '92. 9. 9 개정안 입법예고

나. 내년 국회 상정

- 건설업법
 - 부실시공업체 제재 강화
 -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
- 건축사법
 -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

<시행령 및 규칙 개정>

- 건축사법 시행령('92. 10)
 - 공사감리 업무범위 구체화
- * '92. 9. 18 경제장관회의 통과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('92. 12)
 - 민간감리 전문회사 기술인력의 신축적 활용
 - 설계심의 내실화
- * '92. 9. 23 개정안 입법예고
- 건설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'92. 12)
 - 도급한도액 산정제도 개선
 -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과징금액 인상
- 예산회계법 시행령
 - PQ제도 도입, 최저가 낙찰제('92. 12)
- * '92. 9. 18 개정안 입법예고
- 내역입찰제 적용대상공사 확대('93. 6)